

(3) (1)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원내의 장학지도,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원로교사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4항 관련 참조

나.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부훈령 제88호)

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

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

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

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 2025. 9. 1부터 2029. 8. 31까지

예2)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62세 정년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임기: (임용일)부터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예3)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 (임용일)부터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2) 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중임 절차

가) 인사위원회 심의(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1조)

교육감은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중임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정함

- 교장 · 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 정신상 건강 상태
- 교장 · 원장으로서의 학교 또는 유치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 기타 교장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 · 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등 성관련 비위*, 성적조작) 관련 여부
*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불륜 등 포함
※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 · 중임 모두 배제
- 2022.1.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 및 징계의결 요구·처분 유무

나) 교육감의 교장 임용서류 제출

-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1부
-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 1부

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3) 임기 만료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가) 교사임용희망서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